

부산직할시사하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·건물및자동차에 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이유서

의안번호	187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. 7. 23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개정의 이유

현행 조례의 내용은 자활촌에 거주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에게만 구세감면 혜택이 주어지고, 그의 국가유공자에게는 구세면제혜택이 없어 본래의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충분히 따르지 못하여 금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상이군경의 4·19의거 희생자 등 다른 국가유공자에게도 구세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.

2. 주 요 골 자

가. 국가유공자 자활촌에 거주하지 않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군경의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를 감면하여 주던 것을 상이군경의 다른 국가유공자 보철용 승용자동차의 면허세도 감면

나. 현행 조례로 정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이등급 2급의 경우 14호외 6개 상이호수인 주로 다리부분에 상이가 있는 자에게 구세를 면제하던 것을 2급의 상이자 전원에게 구세면제혜택을 주고자 함.

3. 관계법령

가. 지방세법 제 7조 1항 및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

나. 내무부 준칙

4. 주요 사업계획 : 없음

5. 예산 조치사항 : 없음